

의안번호	2214830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6.2.19.
추 계 번호	25B667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에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과 지역노동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며,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1,000만원, 2031년 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억 5,600만원(연평균 1억 7,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	8	8	8	8	8	40	8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안 제6조)	42	—	—	—	—	42	8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의 수립(안 제7조)	—	714	—	—	—	714	143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안 제13조)	60	—	—	—	—	60	12
추가재정소요	110	722	8	8	8	856	171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의 추진 여부,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는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프리랜서·청소녀·여성 근로자 및 이주배경 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현황과 국민의 노동인권 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노동인권교육정책의 심의·의결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소관 정책자문위원회에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2항) 1. 노동인권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및 중립성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의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함(제4항) 1.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노동계, 경영계 중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노동전문가 중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반영하여야 함(제5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3	안 제6조(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 계획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2항)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제3항) 1.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계획의 이행 점검 및 평가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7조(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항)	
5	안 제8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함(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6	안 제9조(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항목,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7	안 제10조(학교노동인권교육)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함(제2항)	재량·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1조(사회 노동인권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노동인권의식 함양 및 노동관계법 이해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제3항) 1.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2. 사회 노동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9	안 제12조(사업 장 등에서의 노 동인권교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 밖에 설치된 교육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이 사업장등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인권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0	안 제13조(노동 인권교육 실태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11	안 제14조(노동 인권교육주간)	국민의 노동관계 법령 이해력과 노동인권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노동인권교육주간으로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5조(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법인·기관·단체를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1.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및 활용 4.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 지정절차와 그 밖의 구체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13	안 제1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4	안 제17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 등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미대상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5조(노동인권교육정책의 심의·의결 등)	○	• 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3	안 제6조(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4	안 제7조(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의 수립)		
5	안 제8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9조(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항목,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0조(학교 노동인권교육)	—	• 미대상(제1항)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대상(제2항)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이 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3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지원 내용 및 수준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11조(사회 노동인권교육)	×	• 미첨부(제1항 및 제2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들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 및 노동관계법 이해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다만, 사회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미대상(제3항)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9	안 제12조(사업장 등에서의 노동인권교육)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업장 밖에 설치된 교육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등”)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장등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의 규모와 지원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 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노동인권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0	안 제13조(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	• 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11	안 제14조(노동인권교육주간)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민의 노동관계 법령 이해력과 노동인권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노동인권교육주간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15조(노동 인권교육전문기 관의 지정 등)	—	• 미대상(제1항 및 제2항)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법인·기관·단체를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3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이 수행하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노동인권교육기관이 추진할 사업 규모와 지원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3	안 제16조(공공 기관에 대한 협 조 요청)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4	안 제17조(업무의 위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

-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소관 정책자문위원회에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민간위원 수) 10명

- 제정안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민간위원의 규모에 대해 알 수가 없으나, 본 추계서는 위원회의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인적 구성별¹⁾ 비중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1)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단가)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횟수) 회의개최 횟수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0	10	10	10	10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8	8	8	8	8	40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인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이외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 예산 및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

나.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안 제6조) 및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대상자 수)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 주체는 각각 고용노동부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임

1.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노동계, 경영계 중에서 노동인권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노동전문가 중에서 노동인권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8)

- (국가계획) 고용노동부
- (지역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 본 추계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³⁾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산
-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주기는 제정안에 따라 5년으로 산출하되,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계획은 국가계획의 수립 이듬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지원 단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은 연구용역의 형태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용역단가는 동일하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이때, 용역단가는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4,200만원)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및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의 수립에 따른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안 제6조)	42	—	—	—	—	42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의 수립(안 제7조)	—	714	—	—	—	71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안 제13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하나, 본 추계서는 유사사례를 토대로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3)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각각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는 제정안에 따라 5년으로 산출하며, 실태조사 결과 공개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유사사례 1)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 (주요내용) 지방의회 구성 및 교육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인권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 (발주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용역예산) 6,000만원(2025년)

*** (유사사례 2) 군 인권교육 운영현황 실태조사**

- (주요내용) 군인권교육이 실제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는지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
- (발주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용역예산) 6,000만원(2023년)

[표 4]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안 제13조)	60	—	—	—	—	6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에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과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며,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억 5,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5조)	8	8	8	8	8	40	8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안 제6조)	42	—	—	—	—	42	8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714	—	—	—	714	143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안 제13조)	60	—	—	—	—	60	12
추가재정소요	110	722	8	8	8	856	171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의 추진 여부,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부 항목의 예산을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